1998. 12.

1999년도
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99 예산(안) 편성방향 및 규모

가. 예산(안) 편성중점방향

○ 지방재정의 「공공성」 「효율성」 「투명성」 으로 재정운영의 효율화 도모

○ 최근 경제상황과 지역특수요인 그리고 '98 지방세수 실적 등 감안하여 편성

○ 관행적으로 집행하는 예산은 필요성을 재검토하여 IMF 경제여건에 맞도록 편성

□ 편성기준

〈세입예산〉

○ 지방세는 '99 징수전망치 계상

○ 세외수입은 징수요율 현실화 등 적정선 계상

○ 중앙의존 재원은 정부의 통보하는 내용에 따라 편성

○ 지방채 발행은 최대한 억제

〈세출예산〉

○ 기준경비 및 경상비는 최대한 절감하여 투자재원 확보

○ 낭비성, 선심성경비등 불요불급한 경비 최대한 억제

○ 지역경제활성화, 지역균형개발사업비 중점투자

○ 실업대책, 중소기업지원, SOC등 낙후 지역개발분야 우선투자

○ 신규투자는 억제, 마무리사업에 투자력 집중

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규모

(단위 : 천원)

회계별	예산액		전년도예산액		증감	
	금액	%	금액	%	금액	%
합계	860,399,383	100	990,067,711	100	△129,668,328	△13.1
일반회계	639,343,690	74.3	750,834,300	75.8	△111,490,610	△14.8
·지방세	135,421,000	21.2	180,044,000	24.0	△44,623,000	△24.8
·세외수입	63,426,056	9.9	91,232,281	12.2	△27,806,225	△30.5
-경상적세외수입	17,509,704	2.7	22,070,411	2.9	△4,560,707	△20.7
-임시적세외수입	45,916,352	7.2	69,161,870	9.2	△23,245,518	△33.6
·지방교부세	130,939,069	20.5	161,199,784	21.5	△30,260,715	△18.8
·지방양여금	72,943,146	11.4	90,032,376	12.0	△17,089,230	△19.0
·보조금	236,614,419	37.0	224,767,059	29.9	11,847,360	5.3
·지방채	-	-	3,558,800	0.4	△3,558,800	△100.0
특별회계	221,055,693	25.7	239,233,411	24.2	△18,177,718	△7.6
·공기업특별회계	178,988,113	81.0	196,549,400	82.2	△17,561,287	△8.9
-지역개발기금	126,361,966	57.2	137,931,637	57.7	△11,569,671	△8.4
-공영개발사업	52,626,147	23.8	58,617,763	24.5	△5,991,616	△10.2
·기타특별회계	42,067,580	19.0	42,684,011	17.8	△616,431	△1.4
-도립옥천전문대운영	2,408,649	1.1	2,071,376	0.9	337,273	14.0
-의료보호기금	31,301,990	14.2	28,328,242	11.8	2,973,748	10.5
-농어촌소득개발기금	5,790,181	2.6	5,790,181	3.7	△3,136,110	35.1
-대청호특별대책지역 환경기초운영관리	2,422,000	1.1	2,398,102	1.0	23,898	1.0
-증평출장소지방산업 단지조성사업	144,760	0.1	960,000	0.4	△815,240	△84.9

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규모

(단위 : 천원)

회계별	예산액		전년도예산액		증감	
	금액	%	금액	%	금액	%
합계	**860,399,383**	**100**	**990,067,711**	**100**	**△129,668,328**	**△13.1**
일반회계	**639,343,690**	**73.9**	**750,834,300**	**75.8**	**△111,490,610**	**△14.8**
· 인건비	54,342,212	8.5	57,067,289	7.6	△2,725,077	△4.8
· 물건비	38,253,308	6.0	44,915,065	6.0	△6,661,757	△14.8
· 이전경비	203,624,104	31.8	190,286,405	25.3	13,337,699	7.0
· 자본지출	301,394,482	47.1	413,485,756	55.1	△112,091,274	△27.1
· 융자 및 출자	4,921,920	0.8	6,000,000	0.8	△1,078,080	△18.0
· 보전재원	5,796,391	0.9	4,345,507	0.6	· 1,450,884	33.4
· 내부거래	24,123,560	3.8	21,703,742	2.9	2,419,818	11.1
· 예비비및기타	6,887,713	1.1	13,030,536	1.7	△6,142,823	△47.1
특별회계	**221,055,693**	**25.7**	**239,233,411**	**24.2**	**△18,177,718**	**△7.6**
· 지역개발기금	126,361,966	57.2	137,931,637	57.7	△11,569,671	△8.4
· 공영개발사업	52,626,147	23.8	58,617,763	24.5	△5,991,616	△10.2
· 도립옥천전문대학	2,408,649	1.1	2,071,376	-	337,273	16.3
· 의료보호기금	31,301,990	14.1	28,328,242	11.8	2,973,748	10.5
· 농어촌소득개발기금	5,790,181	2.6	8,926,291	3.7	△3,136,110	△35.1
· 대청호특별대책지역 환경기초시설운영관리	2,422,000	1.1	2,398,102	1.0	23,898	1.0
· 증평출장소지방산업 단지조성사업	144,760	0.1	960,000	0.4	△815,240	△84.9

2. 예산(안) 내역

□ 세입예산

1999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 총규모는 8,603억 9,938만 3천원으로, 그중 일반회계가 74.3%인 6,393억 4,369만원,
특별회계가 25.7%인 2,210억 5,569만 3천원임.

〈당초 일반회계〉

○ 일반회계의 세입재원은 자체재원인 지방세가 1,354억 2,100만원, 세외수입이 534억 2,605만 6천원이며,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보조금등은 4,379억 891만 8천원임.

-지방세수입은 전년도예산보다 24.8%인 446억 2,300만원이 감액된 1,354억 2,100만원으로

· 취득세는 전년도보다 28.2%인 201억 9,900만원이 감액된 514억 7,500만원 이고,
· 등록세는 전년도보다 24.7%인 219억 5,000만원이 감액된 669억 9,100만원 이며,
· 면허세는 전년도보다 3.6%인 2억 3,700만원이 감액된 63억 4,700만원임.
· 또한 목적세인 공동시설세는 2.1%인 1억 3,600만원이 감액된 64억 9,700만원임.
· 지역개발세는 10.5%인 1억 5,400만원이 증액된 16억 2,600만원임.
· 과년도 수입은 전년도 대비 47.6%인 22억 5,500만원이 감액된 24억 8,500만원임.

-지방세수입의 증감사유는,

· 지방세의 주종 세목인 취득세, 등록세등 부동산 관련세는 IMF 경제위기와 구조조정등으로 전반적인 경기침체 영향으로 세수전망이 불투명한 상태를 감안하였고,
· 면허세는 차량이 현저히 줄어드는 경향으로 3.6% 감액하여 목표액을 책정한 것으로 보이며.

-목적세인 공동시설세는 '99 징수전망 등을 감안하여 2.1%가 감액한 목표액을 책정한 것으로 판단되며,

-과년도수입은 체납총액을 심층분석 최근 3년간 평균징수율을 감안하여 징수가능액을 전액 계상하여 47.6%가 감소한 목표액을 책정한 것으로 보임.

-세외수입은 전년도예산보다 41.4%인 378억 622만 5천원이 감액된 534억 2,605만 6천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에 있어서는〉

- 재산임대수입에서 전년도예산액 1억 9,257만원보다 5.1%인 976만 3천원이 감액된 1억 8,280만 7천원으로 조령산 자연휴양림 임산물 판매장 및 매점 임대수입과 공무원 교육원 구내식당 임대에 따른 수입으로 토지는 공시지가 기준, 기타의 경우 충청북도 공유재산 관리례조례에 따라 산출한 가격을 기준으로 계상
- 사용료 수입에 있어 전년도 예산액 31억 421만 2천원의 45.6%인 14억 1,407만 9천원이 감소된 16억 9,013만 3천원으로 골재채취료 수입이 감소됨.
- 수수료수입은 전년도예산 19억 2,784만 6천원보다 63.9% 증액된 31억 6,028만원으로 보건검사수수료, 순환수렵장 증지수입 등을 계상
- 사업수입에 있어 전년도 예산 3억 7,377만 5천원보다 6.0%인 2,243만원이 증액된 3억 9,620만 5천원으로 농업기술원, 내수면개발시험장 사업수입 등을 계상.
- 이자수입은 전년도 예산 86억 8,910만 8천원보다 0.1%인 1,291만 9천원이 감액된 86억 7,618만 9천원을 계상.
- 징수교부금수입은 전년도 예산 77억 8,290만원보다 56.3%인 43억 7,881만원이 감액된 34억 409만원으로 교부금 수입이 감소.

〈임시적 세외수입에 있어서는〉

· 순세계 잉여금은 전년도예산보다 88.9% 감소된 50억원이 계상됨.

· 융자금 회수수입에 있어 전년도예산 16억 232만 4천원의 46.8%인 7억 4,932만 4천원이 감액된 8억 5,300만원으로, 이는 농촌주택개량융자금회수가 감소됨.

· 국유재산 매각수입은 2억 1,300만원으로 국유재산 매각대금 귀속분임.

· 공유재산 매각수입은 전년도예산 28억 4,611만원의 59.9%인 17억 551만원이 감액된 11억 4,060만원으로 도유림 임목매각, 폐천부지매각 등을 계상.

· 부담금은 12억 5,518만 6천원이 감액된 100억 1,034만 3천원 규모임.

· 잡수입은 전년도 예산 18억 2,150만 2천원보다 920.7%인 167억 6,990만 7천원이 증액된 185억 9,140만 9천원으로 이는 잡수입등이 증액됨.

· 과년도 수입은 전년도 예산과 동일한 1억 800만원임.

-지방교부세는 전년도보다 18.8%인 302억 5,831만 5천원이 감액된 1,309억 4,146만 9천원으로

· 보통교부세	1,128억원
· 특별교부세	77억 8,964만원
· 증액교부금	103억 5,182만 9천원임.

-지방양여금은 전년도보다 21.2%인 191억 523만원이 감액된 709억 2,714만 6천원은,

· 하수종말처리사업	195억 9,500만원
· 분뇨처리시설	7,000만원
· 축산폐수처리시설	17억 7,500만원
· 오염하천정화사업	3억 3,000만원
· 정주권개발사업	86억 6,014만 5천원
· 문화마을조성사업	32억 746만 1천원
· 오지개발사업	76억 5,654만원
· 지방도정비사업	192억 3,800만원

· 청소년 공부방운영 1억 3,200만원
· 청소년 어울마당운영 1억 100만원
· 청소년문화집 조성 3억 8,600만원
· 청소년수련시설 특성화사업 1억 5,000만원
· 군도정비사업(증평) 17억 2,000만원
· 농어촌도로정비사업(증평) 2억 3,100만원
· 소하천정비(증평) 4,200만원
· 하수관거정비(증평) 8,700만원
· 재정보전 55억 7,500만원
· 인건비보전 19억 7,100만원등이
계상됨

-국고보조금은 전년도대비 4.5%인 100억 7,171만 1천원이 증액된 2,348억 3,877만원으로 이는
· 외교통상부 1억 5,645만원
· 행정자치부 159억 9,508만 3천원
· 문화관광부 63억 4,759만 2천원
· 농림부 583억 2,909만 1천원
· 산업자원부 10억원
· 보건복지부 648억 98만 4천원
· 환경부 113억 1,996만원
· 노동부 24억 6,816만 5천원
· 건설교통부 580억 2,760만원
· 해양수산부 3,880만원
· 농촌진흥청 38억 6,846만 4천원
· 산림청 123억 5,047만 7천원
· 식품의약 안전청 119만 1천원
· 병무청 1억 1,276만 3천원
· 청소년 보호위원회 2,215만원등이
계상됨.

-기금수입은 50억 6,187만 2천원이 감액된 12억 153만 3천원이 계상됨.

〈특별회계〉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안) 규모는 2,210억 5,569만 3천원으로서 2개의 공기업 특별회계가 1,789억 8,811만 3천원, 기타 5개 특별회계가 420억 6,758만원임.

공기업특별회계중,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는 1,263억 6,196만 6천원으로,

· 융자금 이자수입	161억 7,606만 5천원
· 예금이자	50억원
· 채무면제이익	3,000만원
· 융자금회수 수입	201억 5,590만원
· 지방채매출수입	300억원
· 이월금	550억원
· 과목존치	1천원이며,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526억 2,614만 7천원으로

· 영업수익	187억 8,019만 2천원
· 영업외수익	15억 3천원
· 이월액	323억 4,595만 2천원이며,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313억 199만원으로

· 순세계잉여금	1억 6,000만원
· 전입금	34억 5,535만 1천원
· 융자금원금수입	300만원
· 잡수입	1억원
· 국고보조금	275억 6,363만 9천원
· 이자수입	2,000만원이며,

-대청호특별대책지역환경기초시설운영관리 특별회계는 24억 2,200만원으로
이는 '99 대청호환경기초시설운영비 부담액임.

-농어촌소득개발기금은 57억 9,018만 1천원으로

· 이자수입	2억 5,285만 1천원
· 순세계 잉여금	2억 9,593만원
· 전입금	3억원
· 융자금 원금수입	49억 4,140만원임.

-증평출장소지방산업단지 조성특별회계는 1억 4,476만원으로

· 이자수입	1억 4,476만원임.

-도립옥천전문대학 운영특별회계는 24억 864만 9천원으로

· 재산임대수입	· 112만 5천원
· 수수료수입	11억 1,690만원
· 이자수입	4,000만원
· 순세계잉여금	2억 5,062만 4천원
· 전입금	5억원
· 국고보조금	5억원임.

〈수정일반회계〉

□세외수입에 있어서

-임시적 세외수입은 100억원이 증액되었는바,

· 공영개발사업이익처분금 100억원이

□지방교부세에 있어서

-증액교부금이 240만원이 감액되었는바,

· 임도보수 240만원

□지방양여금에 있어서

-20억 1,600만원이 증액되었는바,

· 지방도정비 20억 1,600만원

□보조금에 있어서

-국고보조금 5억 6,411만 6천원이 증액되었는바,

· 문화관광부 400만원

· 농림부 7,263만 9천원

· 보건복지부 464만 2천원

· 환경부 4억 8,283만 5천원

등이 계상됨.

-기금수입은 관광진흥개발기금 1,000만원이 증액 계상됨.

□세출예산

'99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 총규모는 8,603억 9,938만 3천원으로,

그중 일반회계가 6,393억 4,369만원, 특별회계가 2,210억 5,569만 3천원임.

〈당초 일반회계〉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항목별로 설명해 드리면,

-인건비로는 전년도 예산보다 4.8%인 27억 2,507만 7천원이 감액된 543억 4,221만 2천원으로,

이는 공직구조조정에 따른 감원에 기인함.

-물건비로는 전년도 예산보다 15.2%인 68억 4,276만 9천원이 감액된 380억 7,229만 6천원으로, 이는 복리후생비인 체력단련비가 감액된 것임.

-이전경비로는 전년도 예산보다 1.2%인 22억 1,412만원이 증액된 1,925억 52만 5천원으로 이는 사회보장적 수혜금, 기타보상금, 포상금, 자치단체 출연금, 민간위탁금등이 증액된 것임.

-자본지출은 전년도 예산보다 27.8%인 1,148억 9,341만 1천원이 감액된 2,985억 9,234만 5천원임.

-융자 및 출자로는 전년도 예산보다 18.0%인 10억 7,808만원이 감액된 49억 2,192만원으로 이는 주택개량사업 융자금이 감소된 것임.

-보전재원은 전년도 예산보다 33.7%인 14억 5,088만 4천원이 증액된 57억 9,639만 1천원으로 이는 예금은행 차입금이 상환된데 기인함.

-내부거래는 전년도 예산보다 11.3%인 24억 4,860만 8천원이 증액된 241억 5,235만원으로 이는 중소기업구조조정자금조성, 노인복지기금등 적립금이 증액된데 기인함.

-예비비 및 기타는 전년도 예산보다 35.7%인 46억 5,260만 1천원이 감액된 83억 7,793만 5천원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에 대하여 기능별로 보고드리면,

-일반행정비	669억 9,232만 2천원
-사회개발비	1,964억 3,938만원
-경제개발비	2,631억 4,092만 7천원
-민방위	252억 9,497만 3천원
-지원 및 기타경비	748억 8,837만 2천원

이며,

○주요 경비별로는

첫째, 인건비 및 기본경상비등 법정 의무적 필수경비로 1,799억원으로

-인건비 및 기준경비	835억원
-경상적 경비	137억원
-징수교부금	534억원
-특별회계전출금	77억원
-지방채상환	132억원
-예비비	84억원이며,

둘째, 국고보조사업등 중앙지원사업으로 3,831억원으로

-국고보조사업	2,805억원
-지방양여금사업	850억원
-특별교부세사업	162억원
-중앙기금 사업	14억원이며

셋째, 도 자체사업비는 638억원으로

-국제통상 및 경제활성화분야	173억원
-도로·교통등 건설분야	169억원
-사회복지 및 환경분야	88억원
-농정분야	68억원
-문화예술 및 관광진흥사업	55억원
-정보화·자치행정·소방분야	85억원임.

〈특별회계〉

○특별회계 세출예산을 보고드리면,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는

·업무관리비(인건비, 일반운영비등)	113억 7,147만원
·기금융자금	700억원
·상환금	332억 4,767만 6천원
·예비비	117억 4,282만원

이고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업무관리비(인건비, 일반운영입, 관서당경비등)	9억 4,548만 9천원
·지급이자	22억 1,600만원
·용지조성사업비	13억 7,840만 5천원
·가동설비자산	1,004만원
·예비비	480억 7,621만 3천원

이며,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시군의료보호진료비, 2종 의료보호대상자 대불금 등을 계상하였고,

-농어촌 소득개발기금 특별회계는

· 융자금 지원사업비를 계상하였으며,

-대청호특별대책지역환경기초시설운영관리특별회계는 환경기초시설운영비로 계상함.

-증평출장소 지방산업단지조성특별회계는 토지보상비를 계상함.

-도립옥천전문대학 운영특별회계는

· 경상예산(인건비, 관서운영비, 경상적경비등)	10억 8,254만 1천원
· 사업예산	13억 550만 8천원
· 예비비	2,060만원임.

〈수정예산 일반회계〉

-물건비로는 기정예산보다 0.5%인 1억 8,101만 2천원이 증액되었는바,
이는 일반운영비, 일시사역인부임, 학술용역비등이 증액된데 기인함.

-이전경비는 기정예산보다 5.8%인 111억 2,357만 9천원이 증액되었는바,
이는 충북신용보증조합설립출연금,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금등이 증액됨.

-자본지출은 기정예산보다 0.9%인 28억 213만 7천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시설비, 자치단체 자본이전, 자산취득비등이 증액됨.

-내부거래는 2,879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이는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임.

-예비비는 14억 9,022만 2천원을 감액하여 경정하였음.

3. 검토의견

1999년도 충청북도 예산(안)은 일반회계 6,267억 5,597만 4천원, 특별회계 2,210억 5,569만 3천원등 총 8,478억 1,166만 7천원 규모로 전년도 예산대비 14.2%가 감액된 규모입니다.

이는 전년도 예산증가율 7.2%에 비교하면 21.6%가 낮아진 것으로 재정규모가 영세하고 국가재정에 높은 의존성을 보이는 가운데에서 '99년도 예산(안)은 자주재정과 자율성을 기반으로 국가와 지방, 도와 시군간의 재정역할을 재정립하고 국가경제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 재정긴축노력을 강화하여 투자재원을 최대한 확보하고 합리적인 재원배분으로 투자효율성 제고를 위한 노력이 엿보이는 예산편성이라 사료되며, 몇가지 사항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방세 체납 대책강구 및 세입추계의 현실화 노력입니다.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다양하게 분출하고 있는 지방재정 수요를 충족시켜 나가려면 자주재원의 확충이 중요한 관건입니다. '98년 9월말 현재 지방세 체납액은 222억 9,400만원으로 재정형편이 열악한 우리도의 재정운용에 어려움을 더해 주고 있습니다.

특히 과년도분 도세는 13억 4,890만원으로 장기 또는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압류등 강력한 징수의지가 요구되며 체납액의 발생사유를 면밀히 분석하여 조기 채권을 확보함은 물론 체납액 일소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세입추계는 세수 및 교부세 사업등을 정밀 분석하여 전액을 당초 예산에 계상하여 추경요인이 발생치 않도록 하여야 함에도 매년 수정 및 추경예산편성이 관례화 됨에 따라 예산편성에 따른 행정력의 소모는 물론 재정운용의 효율성이 저해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세입추계를 현실화하여 지방재정 운영의 건전화를 도모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둘째, 지방재정 구조의 경직성입니다

IMF 관리체제하에서 정부의 구조조정등으로 전반적인 경기침체에 따른 지방세수의 감소와 중앙정부지원 감축으로 지방재정 운영이 더욱 더 어려워 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므로 지방재정의 건전운영을 위해서는 한정된 예산범위내에서 짜임새 있는 예산편성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1999년도 당초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구조를 보면 총 예산대비 경상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45.5%, 기타 채무상환, 예비비등이 차지하는 비율이 6.9%이며 자본지출이 차지하는 비율은 47.6%입니다.

이를 '97, '98 연도 2년간 당초예산과 비교해보면 자본지출은 각각 5.9%, 7.6% 감소하였으나, 경상예산은 각각 5.6%, 6.6%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예산이 지역개발 사업이나 사회간접 시설 건설에 투자되기 보다는 보상금, 지원금등 수혜적, 일회성 경비와 행사성 경비지출이 증가하고 있어 예산지출면에서 낭비성 예산집행이 될 우려가 있으므로 경제적 타당성이나 우선순위에 입각한 투자사업이었는지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세출예산 구조비교〉

(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구 분	'99		'98		'97		비고
	예산액	비율(%)	예산액	비율(%)	예산액	비율(%)	
계	626,756	100	750,834	100	739,440	100	
경상예산	284,915	45.5	292,269	38.9	294,946	39.9	
자본지출	298,592	47.6	413,486	55.1	395,313	53.5	
기 타	43,249	6.9	45,079	6.0	49,181	6.6	

셋째, 기금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도 각종 기금총액은 716억 9,800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기금의 경우에는 그 활용도에 있어서 이용하기 어려운 조건 등의 이유로 본래의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바, 수요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활용절차를 마련하는 등 제도개선을 통한 기금의 활용도를 높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97년도 결산검사에서 지적한 바 있는 각종 기금은 조례상 규정된 관리방법에 의하여 각 부서마다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운영하고 , 기금의 예치기관도 도금고와 기타 금융기관으로 각각 달리 규정되어 실행되고 있는바, 기존의 예탁기관, 예탁조건, 운영실태등을 통제하는 수단이 요망되며 필요하다면 관련조례를 개정하여 합리적인 관리가 되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기금별 조성 및 운용규모〉

(단위 : 백만원)

기 금 별	'99 기금운용계획				
	합 계	사업비	차입금상환	기금관리비	여유자금
합 계	71,698	33,506	8,226	-	29,966
본 청	71,493	33,494	8,226	-	29,773
○여성발전기금	200	-	-	-	200
○재난관리기금	330	300	-	-	30
○중소유통업구조개선기금	14,300	14,200	-	-	100
○중소기업육성기금	29,378	10,828	8,226	-	10,324
○생활보호기금	126	-	-	-	126
○저소득 주민자녀장학기금	1,120	120	-	-	1,000
○재해구호기금	7,129	2,316	-	-	4,813
○장애인 복지기금	212	-	-	-	212

기 금 별	'99 기금운용계획				
	합 계	사업비	차입금상환	기금관리비	여유자금
○노인복지기금	988	75	-	-	913
○식품진흥기금	5,358	2,380	-	-	2,978
○1지역 1명품 육성기금	729	700	-	-	29
○문화예술진흥기금	6,732	467	-	-	6,265
○청소년자립지원기금	180	15	-	-	165
○청소년장학기금	24	2	-	-	22
○재해대책기금	2,062	1,341	-	-	1,284
○자동차운수사업 발전기금	2,625	1,341	-		1,284
○증평출장소	205	12	-	-	193
○청소년자립지원기금	61	-	-	-	61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144	12	-	-	132

넷째, 선심성, 전시성 예산으로 인한 예산운영의 비효율성입니다.

각종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지원과 행사지원등 선심성, 전시성 행정으로 인한 예산낭비와 1억 미만의 소규모 사업배분과 무리한 사업추진, 그리고 민간 실비보상등 수혜적 · 선심성 경비지출이 증가하였는바, '98년 예산과 비교하면 사회보장적 수혜금 50.7%, 민간실비보상금 9.4%, 기타보상금 53.3%, 민간위탁금 102.8%, 자치단체경상보조 41.5%등이 증가된 반면, 사업예산은 '98년도 예산대비 27.7%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전시성, 선심성 소규모 투자사업과 각종 단체, 행사에 대한 경비지출 증액편성에 대해서는 재검토 되어야 하겠습니다.

〈보상금 또는 보조금 예산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99 대비 증감율(%)	
	'99	'98	'97	'98	'97
○ 사회보장적 수혜금	642,744	426,508	227,644	50.7	182.3
○ 민간실비 보상금	727,892	665,072	695,989	9.4	4.6
○ 기타보상금	1,304,431	851,126	1,027,770	53.3	26.9
○ 민간위탁금	1,789,232	882,067	895,769	102.8	99.7
○ 자치단체경상보조	104,067,168	73,546,887	64,890,589	41.5	60.4

다섯째,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입니다.

1999년도 각종 민간 또는 사회단체의 경상보조에 대한 예산(안)은 92억 9,060만 4천원으로 이를 연도별 당초예산에 대비해보면 '97년도 예산에 비해서는 18.2%가 증가한 14억 3,260만 4천원, '98년도 예산에 비해서는 19.3%가 증가한 14억 9,985만 1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1999년도 예산편성 지침에 의하면 민간 또는 사회단체의 경상보조 예산은 정액보조 단체에 10억 4,494만원, 임의 보조단체에 8억원으로 총 18억 4,494만원을 편성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단, 예산편성기본 지침으로 정한 경비외에 위탁사업등 지방자치단체의 필요에 의하여 지원을 할 경우와 국고 또는 시·도비 보조금에 의한 경우는 별도 지원 할 수 있다고는 하나, 또한 비록 1999년도 전체 예산의 1.5%로 차지하는 비중이 낮다고는 하지만 현재 빈약한 도재정으로 보아 일부 사회단체에 대한 운영비지원이나 기존 사회단체에 대한 운영비 증액, 지원은 현실정에 맞는 것인지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여섯째, 공통경비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운영의 탄력성과 융통성을 기하기 위하여 관련부서에 공통경비 예산을 계상하였으나 '98년도 예산 24억 9,350만원에 비해 172.6%인 43억 330만원이 증액편성된 사항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통경비 계상내역〉

(단위 : 천원)

PAGE	사 업 명	'99예산	'98예산	증 감	비 고
P 144	기준경비	50,000	-	50,000	예산담당관실(신설)
P 145	을지연습	25,200	25,000	200	민방위비상대책과
P 145	도정추진	25,000	25,000	-	예산담당관실
P 83	주요행사 차량임차	20,000	20,000	-	총무과
P 145	일반수용비	30,000	22,500	7,500	예산담당관실
P 136	위원회 참석수당	60,000	60,000	-	기획관실
P 99	강사·심사수당	30,000	35,000	△5,000	자치행정과
P 146	국내여비	100,000	125,000	△25,000	예산담당관실
	국내여비(기준경비)	90,600	-	90,600	예산담당관실(신설)
P 71	국외여비	200,000	200,000	-	총무과
P 138	학술용역비	500,000	-	500,000	기획관실
P 73	민간인 및 민간 단체시상	100,000	100,000	-	총무과
P 77	공무원및기관표창	60,000	60,000	-	총무과
P 148	성과상여금	1,636,000	-	1,636,000	총무과(신설)
P 148	사회단체보조	800,000	490,000	310,000	예산담당관실
P 148	소규모 숙원사업	3,000,000	1,250,000	1,750,000	예산담당관실
P 149	정수, 비정수 물품 구입	70,000	81,000	△11,000	예산담당관실

일곱째, 증평하수종말처리시설 민간위탁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지침에 의하면 민간위탁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및 조례에 의하여 민간인에게 위탁관리시키는 사업중 기금성격의 사업비로서 사업이 종료되거나 위탁이 폐지될 때에는 전액 국고 또는 지방비로 회수가 가능한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증평하수종말처리시설 민간위탁금을 설치조례 제정에 앞서 6억 5,800만원 계상한 것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이 있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여덟째, 증평사업단지조성 특별회계에 관한 사항입니다.

증평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은 1996년부터 1999년까지 4년간에 걸쳐 총 사업비 540억 8,500만원을 투자하여 계속비사업으로 추진하여 왔으나 감사원 감사시 산업단지 조성에 대한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지적되어 산업단지 지구해제 신청중에 있으나 조례 존폐관계로 특별회계를 폐지 못하고 예산편성을 한 것으로 나타나 있는바 이에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수정예산안〉

수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제118조에 근거를 두어 예산(안)을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고자 할 때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수정안을 보면 일반회계가 125억 8,771만 6천원이 증액된 규모로 편성되어 있으며, 수정예산(안)에 계상된 사업들이 수정예산(안)제출 사유에 해당하는가와 자체 신규사업들에 대해서는 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첫째, 공영개발사업이익처분금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방공기업법에 의하면 지방직영기업은 매사업년도에 이익이 생긴 경우에는 전사업년도로부터 이월한 결손금이 있을 때에는 그 이익금으로서 그 결손금을 보전하고 그러고도 잔액이 있을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잔액의 20분의 1이상의 금액을 이익적립금으로 적립하고, 나머지 잔액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감가적립금 또는 건설개량적립금으로서 적립하거나 제17조제2항의 납부금으로 지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비추어 볼 때 충청북도개발사업소의 존치기한이 1999년 12월 31일까지 임에도 1998년 결산 이익처분금의 일부를 일반회계 잡수입으로 계상하고 이를 충북신용보증조합설립출연금으로 세출예산(안)에 계상한 것에 대하여는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둘째, 공공근로 사업예산에 관한 사항입니다.

공공근로사업은 IMF관리체제하에 국가의 구조조정으로 발생한 실업자 대책을 위하여 세운 예산으로 당초 예산에서 6,000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한 것과 예산감액에 따른 향후 실업자 대책에는 지장이 없는지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셋째, 민간이전 및 연구개발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1999년도에는 지방세수의 감소 국가지원금의 감액으로 지방재정이 열악하여 예산편성시 신규사업, 낭비성.행사성경비 지출을 최대한 억제하고 있는 상황에서 학술용역비로 인삼신상품 연구개발 용역비 30,000천원, 민간위탁금으로 충북학연구 63,000천원, 민간또는사회단체경상보조로 밀레니엄대축제 개최에 11억원을 신규 또는 추가계상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기적으로 볼 때 사업의 타당성과 생산성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넷째, 지방도 정비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항구적 이익이 되거나 또는 비상재해복구 등의 필요가 있을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범위안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채를 발행하고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도 정비사업비 중 채무부담액으로 20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바 예산편성에 앞서 이루어져야 할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점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사료됩니다.